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4. 29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5. 4. 26
- 다. 회부일자 : 95. 4. 26
- 라. 상정일자 : 95. 4. 28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청소과장 이남용)

가. 제안사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제질들의기준에관한규칙이 일부개정 공포(95.2.6)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여 대상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구민 생활속의 조기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 중 3조의 2

다. 주요골자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 범위확대와 적용대상 1회용품 종류 확대
-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규모 확대(객실 30실 이상→객실 7실 이상)
- 판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1회용품 쇼핑백 사용의 규제대상 범위확대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매장면적 200㎡ 이상인 판매점 추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억제 추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허 면)

-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11월 제정된 것임.
- 금번 개정안은 지난 95년2월6일 관련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합성수지 광고물 배포억제의 이행명령 위반자의 범위 확대와 대상항목 강화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임.
- 자연환경의 보존과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 부터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국민적 공감과 당위성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청소과장 이남용)

- 현행 조례의 시행 후 현재까지 본안건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실적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 ▷ 개정전 조례적용 대상업체수는 전체가 433개 업소로 이 중 사전물량이 기 확보된 업소가 56개소로 1개월간 권고하고, 6개월간이내 시행토록 이행명령을 한 후 기간 중 사실조사한 바 위반업체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조례개정 후 적용대상업체수는 대폭 확대되어 1,239개소로 파악되어 있음.
현재 4월 한달동안 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 6개월간을 이행명령 기간으로 하였으며, 기간 경과 후 사실조사를 통하여 미이행업소 적발시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가 주민생활속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23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일부개정 공포(95. 2. 6)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를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구민 생활속에 조기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3. 주요골자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 범위확대와 적용대상 1회용품 종류 확대
 -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규모 확대(객실 30실 이상→객실 7실 이상)
 - 판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1회용품 쇼핑백 사용의 규제대상 범위확대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매장면적 200㎡ 이상인 판매점 추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억제 추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 중 “폐기물관리법”란 “제2호” “가목”중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가목” 중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나목” 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나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차위반 3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 위반 1,000(천원)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다목" 중 "목욕장에서"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라목" 중 "객실이 30실 이상 인 숙박업소에서"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마목" 중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바목" 중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사목" 중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부과금액(천원) 중 "1차위반 2,000"을 "1차위반 1,500"으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차위반

1,000(천원), 2차위반 2,000(천원), 3차위반 3,000(천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 제1호 사목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		행			개 정 (안)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인의 결약과 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5항)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1. 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수 시기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세척·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		행			징 (안)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쭉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 (안)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00 500 1,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회용품 중 이취시계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욕장에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다. 복욕장에서 (1) (생략) (2)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			행			계			정 (인)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원의 질 약과 제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 업에서 1회용품 부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한 콘도미니엄 업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 타 및 쇼퍼센터에서 1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1,500 1,000 1,5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중 객실이 7 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마.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퍼센터 및 매 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 용억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 션)된 1회용광고신전물의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1,000 1,5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직 용 법	현		행			계			정 (안)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바.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2,500 1,500	2,500 3,000	3,0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		행			개			정 (안)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부과항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부과금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p>지원의 절약과 재활동 용 촉진에 관한 법률</p>	<p>(신 설)</p>					<p>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퍼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집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체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 (현행과 같음)</p>	1,000	2,000	3,000				
	2. (생략)												